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10907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109071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100585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0. 17.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100585 판결

##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사이에 2019. 8.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8. 9. 접수 제28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E는 주식회사 F와 D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F와 D은 연대하여 유한회사 E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3. 6. 1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전6412호).

나. 원고는 D에 대한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D의 누나로 피고와 D은 망 G(이하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이 2019. 6. 1.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H, I, J, D은 2019. 8. 5.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라.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피고는 2019. 10. 8. H, I, J에게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D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5 지분을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는 것은 망인의 뜻이기도 하였고 형제들 역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당연히 피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오히려 피고는 공평하게 나누자는 취지에서 형제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과는 교류가 없어 D의 채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였다.

## 3. 판단

###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선의 여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미혼으로 2004. 12. 16.경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부모님 모두 암으로 투병하여 피고가 간병을 하였고 모친은 2017.경, 망인은 2019.경 사망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타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부모님의 간호에 힘쓰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모님을 병간호한 피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2) D의 경우 오래 전부터 외지로 나가 사회생활을 하였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는 D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지 못하였고 특히 D의 구체적인

재산상태라던가 D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D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피고를 비롯한 형제들이 알고 있었다거나 D이 돈을 빌려가기도 했었다거나 D만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점을 들어 피고 역시 악의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D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아니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의 지분이 채무변제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달이 지난 2019. 10.경 보험을 해약하여 D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른 형제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피고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에 대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장욱, 판사 이정현, 판사 구민경

별지